

정보통신대학원 학칙

제정 1992. 8. 27
 개정 1995. 7. 13
 개정 2001. 6. 1
 개정 2003. 2. 12
 개정 2018. 6. 28
 개정 2018.11. 21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(목적)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기본목적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첨단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, 정보통신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 정보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명칭) 본 대학원은 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이라 한다.
- 제 3 조(과정)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(이하 “석사학위과정”이라 칭함)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.
- 제 4 조(학위수여)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 5 조(정원 및 전공분야)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 과정으로 정보통신학과를 두며, 정보통신학과 정원은 교육부에 통보된 정원으로 한다. (개정:2018.6.28.)

제 2 장 입학·재입학

- 제 6 조(입학시기)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.
- 제 7 조(입학자격)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동 예정자
 2.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제 8 조(입학지원절차) 본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간에 전 형료와 함께 제출하고, 소정의 입학전형에 치러야 한다.
1. 입학지원서
 2.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

- 3.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
- 4. 재직(또는 취업예정) 증명서(산업체 재직자에 한함)
- 5. 기타 본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

제 9 조(입학전형) 입학지원자의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정보통신대학원장(이하 '대학원장'이라 칭함)은 필요에 따라 일부전형방법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.

- 1. 학업성취에 대한 서류심사
- 2. 필기시험
- 3. 전공구술시험

제10조(입학허가) 대학원장은 정보통신대학원 대학원위원회(이하 "대학원위원회"이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입학지원자의 입학을 허가한다. (개정:2018.6.28.)

제11조(입학절차)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외국인학생 입학) 외국인학생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명시된 서류 외에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, 별도의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. 전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- 1. TOEFL성적(비영어권 국가의 경우)
- 2. 출신대학 교수 2인 이상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

제13조(재입학)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정원을 고려, 매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, 1회에 한한다. 다만,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의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.

- ②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내용을 참작하여 그 학점을 재사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기간에 병영의무 수행을 위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

제 3 장 등록 · 휴학 · 복학 및 자퇴 · 제적

제14조(등록)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.

제15조(휴학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는 기간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.

-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, 일반학기의 신청학

기와 동일한 학기 중에 군 입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군 입대 휴학으로 간주하고 장기 해외지사근무, 장기해외출장으로 인한 휴학은 그 증빙에 의하여 1개 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.

제16조(복학) ① 휴학기간의 만료 및 휴학사유의 소멸로 복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.

② 군 제대 복학은 제대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군 제대 일자가 수업일수 1/4 이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.

제17조(자퇴)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자퇴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18조(제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.

1. 전조 제15조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자
2.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
3. 재학연한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4.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

제18조의2(재심 청구) 제18조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제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적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4 장 수업, 학점 및 수료

제19조(교과과정)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20조(재학연한)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휴학기간은 제외한다.

(개정:2018.6.28.)

제21조(수업연한)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. 단, 학점의 조기취득, 과정간의 학점이월, 타대학원의 취득학점 인정, 학위논문의 탁월성이 인정되어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.(개정:2018.6.28.)(개정:2018.11.21)

제22조(수업시간) 삭제 (개정:2018.6.28.)

제23조(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(매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

제24조(학기당 취득학점) 학기당 취득학점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6학점 이상 18학점 이내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5조(계절학기) 삭제 (개정:2018.6.28.)

제26조(수료학점)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의 2종으로 교과학점 18학점, 연구학점 12학점이상으로 한다.(개정:2018.11.21)

1. 교과학점은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과정의 과목을 통해서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.
2. 입학 전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, 입학 후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. (신설: 2018.11.21)
3. 연구학점은 논문연구, 세미나, 실험실습 등의 연구 활동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. (개정:2018.11.21)

제27조(학점인정) 학점인정은 강의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C⁺ 이상과 S를 받은 과목의 학점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27조의2(추가시험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을 때는 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3(재수강)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28조(과정의 수료) ① 학칙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이 B⁺ (3.0) 이상인 자는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.

② 과정의 수료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.

제29조(성적평가)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, 과제평가, 출석상황 등을 참작, 부여하며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|
| 등급 | A+ | A ⁺ | A- | B+ | B ⁺ | B- | C+ | C ⁺ | C- | D+ | D ⁺ | D- | F |
| 평점 | 4.3 | 4.0 | 3.7 | 3.3 | 3.0 | 2.7 | 2.3 | 2.0 | 1.7 | 1.3 | 1.0 | 0.7 | 0 |

② 논문연구, 세미나, 실험실습 등 연구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성적은 S(합격) 또는 U(불합격)으로 부여한다.

③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잠정적으로 I(미완)의 성적을 부여한다.

④ 수강신청 후 9주 이내에 수강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W(포기)로 부여한다.

제29조의2(수강포기) ① 학생은 개강 후 4주째부터 9주 이내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, 그 성적은 W(포기)로 처리한다. 단, 3주이내의 수강 포기는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② 삭제 (개정:2018.6.28.)

제 5 장 수업연한 초과 재학

제30조(등록의무) 삭제 (2003. 2. 12)

제 6 장 연구과정 · 공개강좌

제31조(연구과정)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.

② 연구과정의 연구생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심사 및 전형을 거쳐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 연구생은 매학기 석사학위 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 3과목 이내를 수강 연구하여야 한다.

④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청강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.

⑤ 연구 실적이 양호한 연구생에게는 별지서식(1)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32조(공개강좌)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· 기간 · 수강정원 ·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, 공고한다.

제 7 장 징 계

제33조(학사경고) ① 대학원 학생으로서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B⁺ (3.0)에 미달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.

② 재학기간 중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적할 수 있다.

제34조(징계)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
제 8 장 대 학 원 위 원 회

제35조(구성) 대학원 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며, 그 구성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.

제36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37조(위원회의 기능)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학칙·학위수여규정을 비롯한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2. 학생의 입학 및 수료·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3.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4.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
5. 연구과정·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학생상별 및 장학에 관한 사항
7. 등록금에 관한 사항
8. 교과과정 편성, 개편, 운영에 관한 사항
9.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
10. 기타 본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

제38조(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)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 하되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9 장 기 타

제39조(준용규정)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공과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(일반) 학칙을 준용한다.

제40조(시행세칙)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1조(학칙의 개정) 이 학칙의 개정은 사전공고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

며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학칙은 199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학칙은 1995년 7월 13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학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3년 2월 12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변경 학칙중 제24조, 제25조는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,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학칙은 2018년 6월 2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학칙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서식 (1)

제 호

연구실적증명서

소 속 :

성 명 :

20 년 월 일생

연구과정 :

위 사람은 본 대학 정보통신대학원 연구과정에서 년 월 일부터
 년 월 일까지 위의 과정을 연구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.

 년 월 일

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장 ○ ○ ○ (인)

포 항 공 과 대 학 교 총 장 ○ ○ ○ (인)